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이주민 정책 전환과 조례체계 개선 방향¹⁾

류 유 선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지역사회 변화와 정책환경의 변화

글로벌 이동의 확대와 함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 인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과학 기술 기반 도시이자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한 대전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고,
- 수도권 및 영호남과의 접근성, 충청권의 중심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은 이주민의 생활·이동 거점으로써 대전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있음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이주민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민 정책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지역 사회에서는 이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행정 여건, 정책 기반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됨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정책 체계 전반에 새로운 과제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대전시 이주민 관련 조례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이주 현상을 반영한 법적 기반 정비가 필요함

대전 이주민 분포와 지역적 특성

대전 외국인주민 특성

- **(규모)** 2023년 기준 외국인주민 39,969명으로, 전체 대전 인구의 약 2.7%
- **(특성)** 유학생 36.8%, 기타외국인 34.6%, 결혼이민자 11.8%로 구성
- **(공간 분포)** 유성구는 유학생과 외국국적동포, 서구는 결혼이민자, 대덕구는 외국인근로자 집중
- **(체류 특성)** 3년 미만 체류 외국인이 절반 이상으로, '순환형 체류도시' 성격이 강함

표-1. 대전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총인구(2023.11.1.)	외국인주민수	외국인주민비율(%)
대전	1,470,336	39,969	2.7
동구	230,134	9,786	4.3
중구	220,292	4,039	1.8
서구	469,031	8,820	1.9
유성구	379,100	11,732	3.1
대덕구	171,779	5,592	3.3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외국인주민은 대전시 총인구 1,470,336명의 2.7%인 39,969명임. 자치구별로는 유성구에 11,732명의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동구 9,786명, 서구 8,820명, 대덕구 5,592명, 중구 4,039명 순임

대전 유형별 외국인주민의 자치구 거주 현황

외국인주민의 유형 가운데, 대전에는 유학생이 가장 큰 규모로 거주함. 유학생의 37.46%가 동구에, 결혼이민자의 26.16%와 외국인주민 자녀(출생)의 25.47%가 서구에, 외국인근로자의 33.20%와 외국국적동포의 30.63%, 그리고 기타외국인의 33.35%가 유성구에 거주하는 특성을 보임

표-2. 대전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구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자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대전	39,969	29,434	2,825	3,485	10,828	2,112	10,184	3,815	6,720
동구	9,786	7,756	384	632	4,057	291	2,392	736	1,294
중구	4,039	2,272	272	552	110	331	1,007	648	1,119
서구	8,820	6,143	516	912	2,114	548	2,053	965	1,712
유성구	11,732	9,557	938	840	3,735	647	3,397	754	1,421
대덕구	5,592	3,706	715	549	812	295	1,335	712	1,174

1) 본고는 2025년 수행한 기본과제 「대전 이주 및 다문화 관련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모든 자료는 24년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을 기반으로 함

대전 자치구별 이주민 유형

- ▶ **동구**에는 총 9,786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들 가운데 41.45%가 유학생임. 16개 동 가운데, 자양동(3,868명)과 용운동(1,085명), 흥도동(881명)에 동구 외국인주민의 59.61%가 거주하고 있음
- ▶ **중구**에는 총 4,039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들 가운데 27.70%가 외국인주민자녀(출생)임. 17개 동 가운데, 산성동(639명), 은행선화동(469명), 석교동(365명)에 중구 외국인주민의 36.46%가 거주하고 있음
- ▶ **서구**에는 총 8,820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들 가운데 34.41%가 유학생임. 24개 동 가운데, 도마2동(1,100명), 도마1동(999명), 복수동(830명)과 도안동(597명)에 서구 외국인주민의 39.97%가 거주하고 있음
- ▶ **유성구**에는 총 11,732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들 가운데 31.83%가 유학생임. 13개 동 가운데, 온천2동(5,518명)과 신성동(1,232명)에 유성구 외국인주민의 57.54%가 거주하고 있음
- ▶ **대덕구**에는 총 5,592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들 가운데 20.99% 외국인주민자녀, 23.87%가 기타외국인임. 12개 동 가운데, 오정동(1,198명)과 중리동(626명)에 대덕구 외국인주민의 32.61%가 거주하고 있음

대전 다문화가구원 현황

대전광역시 다문화가구원은 총 24,364명으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이 7,0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녀 6,890명, 기타타동거인이 6,348명, 한국인 배우자 3,577명 순임

구별로 보면, 다문화가구원은 서구에 가장 많은 6,296명, 유성구 5,199명, 동구 4,727명, 대덕구 4,082명, 중구 4,060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 내국인과 유사하게 서구와 유성구에 다문화가구원도 많이 거주하며 5개구에 고르게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음

각 자치구의 동별로 다문화가구원의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 ▶ **동구**에는 총 4,727명의 다문화가구원이 거주하는데, 가양2동에 504명, 효동에 449명, 용운동에 421명, 위 세 개 동에 동구 다문화가구원의 29.06%가 거주하고 있음
- ▶ **중구**에는 총 4,060명의 다문화가구원이 거주하는데, 산성동에 740명, 석교동에 395명, 위 두 개 동에 중구 다문화가구원의 27.95%가 거주하고 있음
- ▶ **서구**에는 총 6,296명의 다문화가구원이 거주하는데, 관저2동에 614명, 도마2동에 434명, 도마1동에 404명, 복수동에 394명, 위 네 개 동에 서구 다문화가구원의 29.32%가 거주함

- ▶ **유성구**에는 총 5,199명의 다문화가구원이 거주하는데, 구즉동에 820명, 온천2동에 531명, 진잠동에 515명, 위 세 개 동에 유성구 다문화가구원의 35.89%가 거주하고 있음
- ▶ **대덕구**에는 총 4,082명의 다문화가구원이 거주하는데, 중리동에 536명, 덕암동에 447명, 신탄진동에 403명, 위 세 개 동에 대덕구 다문화가구원의 33.95%가 거주하고 있음

표-3. 대전 자치구별 다문화가구원 현황

	합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자녀		기타동거인	
			결혼 이민자	귀화자 등	귀화인 및 외국국적	국내 출생	내국인	외국인
대전	24,364	3,577	3,463	3,592	247	6,643	6,348	494
동구	4,727	662	629	697	40	1,268	1,327	104
중구	4,060	586	550	620	31	1,107	1,088	78
서구	6,296	921	910	894	77	1,689	1,683	122
유성구	5,199	789	827	699	60	1,406	1,328	90
대덕구	4,082	619	547	682	39	1,173	922	100

대전 이주민 관련 조례체계의 현황과 한계

관련 조례 현황

대전광역시 이주민 조례는 관련 키워드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했을 때, 조례 10개, 시행규칙 2개, 운영규정 1개, 총 13개임. 다문화 관련 조례 1개, 외국인 관련 조례 3개, 시행규칙 1개, 운영 규정 1개, 폭력피해이주여성 1개, 북한이탈주민 관련 1개, 해외 관련 조례 1개와 시행규칙 1개, 국제 관련 조례 3개가 조사되었음(2025년 3월 현재)

현재 대전의 이주민 관련 조례체계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개별 정책대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유학생, 이주배경청년,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과 정주가 확대 되면서, 기존의 대상별 분절적 지원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대전광역시는 조례, 시행규칙 및 운영규정 등 이주민 관련 총 13개의 자치 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법령은 목적과 적용대상이 상이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사업과 정책 범위가 중복되는 경향을 가짐

대전 거주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조례는 없고, 고려인 및 재외동포 관련 조례도 2025년 6월 현재 없는 상황임

이는 기존의 결혼이민 중심 정책체계만으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이주 형태와 지역사회 정주 양상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표-4. 대전광역시 이주민 관련 조례 현황

키워드	조례명
다문화	1)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	1)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3)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북한이탈	1)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해외	1)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시행규칙
국제	1)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2)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3)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이주	1)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조례 개선 방향

대전의 이주민 지원체계는 언어, 체류자격, 제도와 사업 접근 등에서 보편적 권리보장보다는 체류자격과 정책대상 여부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조건부 자격'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주목적과 체류자격 중심의 지원 중심 접근을 넘어,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권리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선 필요

인종과 국적 등에 따른 외국인 및 특정국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이주민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명시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례의 개정 혹은 통합

- 통합시 '대전이주민지원조례(가칭)'로 대상 확대
- 두 조례 개별 개정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주기와 내용 구체화, 정책환류체계 명시, 교육 다양화

② 정책 대상 세분화 및 사각지대 해소

- 현행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지만 대전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을 포괄하는 포용적, 인권적 대상 확대
- 청년 및 교육, 노동정책과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청년,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청년 연결 필요
- 이주민을 위한 임시 숙소 설치 필요

③ 인권 및 포용 기반 강화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복지' 대상이 아닌 '시민'주체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
- 인권보장, 차별금지, 문화적 권리 등 조항 신설로 제도적 기반 강화